

강릉시 공고 제2013—1022호

「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3년 11월 1일

## 강릉시 장

#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

### 1. 제안이유

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저렴한 도시가스의 보급 확대로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으로 서민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

-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용어정의 (안 제2조)

나. 지원대상 (안 제5조)

- 경제성 미달지역으로 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
- 순수 영업·업무 목적의 공급관 설치 신청자는 제외

다. 지원규모 (안 제6조)

-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(세대당 최고 150만원).
- 수급자가구에는 시설분담금 전액을 지원(세대당 최고 200만원)

라.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과 절차(안 제8조)

-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신청서 제출
  - 강릉시도시가스공급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의 적정성, 관계법 저촉 여부, 사업내용과 공사부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의 규모 등을 검토
  - 다수가 신청할 때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
- 마. 위원회 설치 및 구성, 기능, 직무(안 제12조~제15조까지)
- 보조사업 선정 조정 및 협의를 위한 심의의결 기구(10명 이내)
- 바. 사업자·보조사업자 제재(안 제16조)
- 관련법령과 조례의 보조금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  - 사업의 전부·일부를 정지하였을 때
  -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았을 때

### 3. 의견제출

이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릉시장(참조 : 경제진흥과장, 전화 : 033-640-5537, 팩스 : 033-640-4748, 담당자 : 조성광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서(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)
- 나. 제출자의 성명(법인·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), 주소, 연락처
- 다. 기타 의견

붙임 : 강릉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안 1부.  
 끝.